의안 번호	126

2026. 10.

성주사 진입도로 선형개량공사 업무협약 관련 예산 외의 의무부담 동의안

창원시

성주사 진입도로 선형개량공사 업무협약 관련 예산 외의 의무부담 동의안

의안 번호	126

제출년월일 : 2026. 10. 16.
제 출 자 : 창 원 시 장

1. 제안 이유

○ 부산지방국토관리청(이하 “부산청”)에서 창원시 성산구·진해구를 연결하는 「창원시관내국도대체우회도로(제2안민터널) 건설공사」(이하 “석동터널 건설공사”) 추진 중 석동터널 고가교량 설치로 주변 미관을 저해한다는 민원이 접수됨에 따라, 「성주사 진입도로 선형개량공사」의 행정절차 및 보상을 창원시가 추진하고, 공사는 부산청이 시행하는 것으로 협의하였음.

○ 「성주사 진입도로 선형개량공사」를 석동터널 건설공사에 포함하여 시행할 예정이었으나, 석동터널 건설공사의 준공으로 공사에 필요한 추가 공사비 확보가 불가하여 창원시가 「성주사 진입도로 선형개량공사」를 직접 시행하고, 부산청은 창원시 내 국도 관련 대안사업을 시행하는 방안으로 업무협의를 추진하였음.

○ 그 결과, 부산청은 「성주사 진입도로 선형개량공사」의 대안사업으로 창원시 성산구 토월동 일원 「국도25호선 토월IC 주변 교차로 개선공사」를 ‘국도 위험도로 및 병목지점 개선(8단계) 기본계획’에 반영하여 시행하고, 창원시는 「성주사 진입도로 선형개량공사」를 직접 시행하는 내용의 업무협약(안)을 마련하였음.

○ 본 협약 체결을 위해 「지방자치법」 제47조(지방의회의 의결사항) 제1항제8호 및 「창원시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」 제5조(체결방법)제2항에 따라 예산 외의 의무부담에 대하여 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함.

2. 사업 개요

○ 사 업 명: 성주사 진입도로 선형개량공사

○ 위　　치: 창원시 성산구 천선동 523번지 일원

○ 사 업 비: 13.5억 원

○ 사업내용: 도로개설 L=210m, B=11m

3. 협약(안) 주요 내용

○ 협 약 명: 성주사 진입도로 선형개량공사 추진 업무협약

○ 업무분담

- (창원시) 성주사 진입도로 선형개량공사 시행
- (부산청) 국도25호선 토월IC 주변 교차로 개선공사를 국도 위험도로 및 병목지점 개선 8단계 기본계획 반영 및 시행

○ 사업기간

- (창원시) 부산청 공사 시행 시 선형개량공사 착공
- (부산청) 국도 위험도로 및 병목지점 개선 기본계획 반영 시 우선 착수

○ 대안사업 현황

구 분	공 사 명	사업비 (억원)	사업개요	비고
창원시	성주사 진입도로 선형개량공사	13.5	도로개설 L=210m, B=11m	공사비 : 8억원 보상비 : 5.5억원(지급 완료)
부산청	국도25호선 토월IC 주변 교차로 개선공사	41	접속램프 설치 L=670m	창원중앙역세권 주변 교통환경 개선공사(2단계) 173억원 중 일부 시행

4. 그간 주요 경과

○ 성주사 민원사항 협조 요청[부산청→창원시] : ‘20. 6.

○ 성주사 주지 방문 협의[창원시, 부산청, 성주사] : ‘20. 7.

* 성주사 : 진입도로 개선 요구, 부산청 : 공사시행, 창원시 : 보상 및 행정절차 이행

○ 행정절차 관련 협의[창원시, 부산청] : ‘22. 3. ~ ’22. 5.

* 부산청 : 실시설계 완료되었으며, 필요한 행정절차 요청

* 창원시 : 용지보상과 인가 등을 협조, 행정절차에 필요한 서류 보완 요청

○ 도시계획시설 결정(변경) 및 실시계획인가 : ‘23. 5. ~ ’25. 5.

○ 석동터널 개통 : ‘24. 3.

○ 대안사업 선정 업무협의[창원시, 부산청] : ‘25. 8. ~ ‘26. 4.

○ 업무협약(안) 협의[창원시, 부산청] : ‘26. 7. ~ 8.

○ 지방재정 투자심사(자체) : ‘26. 9.

5. 향후 추진계획

○ 성주사 진입도로 선형개량공사 추진 업무협약 체결 : ’26. 11.

6. 관련 규정

○「지방자치법」 제47조(지방의회의 의결사항)

① 지방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

8.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**예산 외의 의무부담**이나 권리의 포기

○ 창원시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 제5조(체결방법)

② 시장은 「지방자치법」 제47조제1항제8호에 해당되는 사항에 대하여 업무제휴 또는 협약을 체결 할 경우에는 미리 창원시의회(이하 “의회“라 한다)에 보고하여야 한다.

7. 협약(안)

부산지방국토관리청과 창원시(이하 “협약당사자”)는 「창원시 관내 국도대체우회도로(제2안민터널) 건설공사」 추진 중 제기된 「성주사 진입도로 선형개량공사」 민원 해소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업무 협약을 체결한다.

제1조(목적) 본 협약서는 「성주사 진입도로 선형개량공사」와 대안사업에 대하여 협약당사자 간 이행하여야 할 제반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업무의 분담) 협약당사자는 다음과 같이 상호 업무를 분담하기로 한다.

① “부산지방국토관리청”은 「성주사 진입도로 선형개량공사」의 대안사업으로 창원시 성산구 토월동 20번지 일원 「국도25호선 토월IC 주변 교차로 개선공사」를 ‘국도 위험도로 및 병목지점 개선(8단계) 기본계획’에 반영되도록 노력하고, 반영 시 공사를 추진한다. 단, 기본계획 미반영 시 협약당사자 간 협의하여 국비 지원이 가능한 대안사업을 선정하여 시행한다.

② “창원시”는 창원시 성산구 천선동 522-16번지 일원 「성주사 진입도로 선형개량공사」를 시행한다.

제3조(사업기간)

① “부산지방국토관리청”는 「국도25호선 토월IC 주변 교차로 개선공사」를 ‘국도 위험도로 및 병목지점 개선(8단계) 기본계획’ 사업 중 우선적으로 착수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한다. 단, 기본계획 미반영 시 대안사업을 협약당사자 간 적극 협의하고, 국비지원이 가능한 대안사업을 선정하여 빠른시일 내 시행한다.

② “창원시”는 제3조제1항의 사업 시행 시 「성주사 진입도로 선형개량공사」를 착공한다.

제4조(진행사항 통보) 협약당사자는 공사 계획·착공·준공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.

제5조(협약의 해석 및 변경)

① 본 협약의 해석 및 협약서 내용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 협약당사자 간에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.

② 본 협약서의 내용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협약당사자간 합의를 통하여 그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.

제6조(상호협력) 협약당사자는 이 협약서에서 정한 내용을 상호존중 및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.

제7조 (효력발생 및 기타사항)

① 본 협약의 효력은 협약 체결일로부터 발생하고, 공사 준공일까지 효력이 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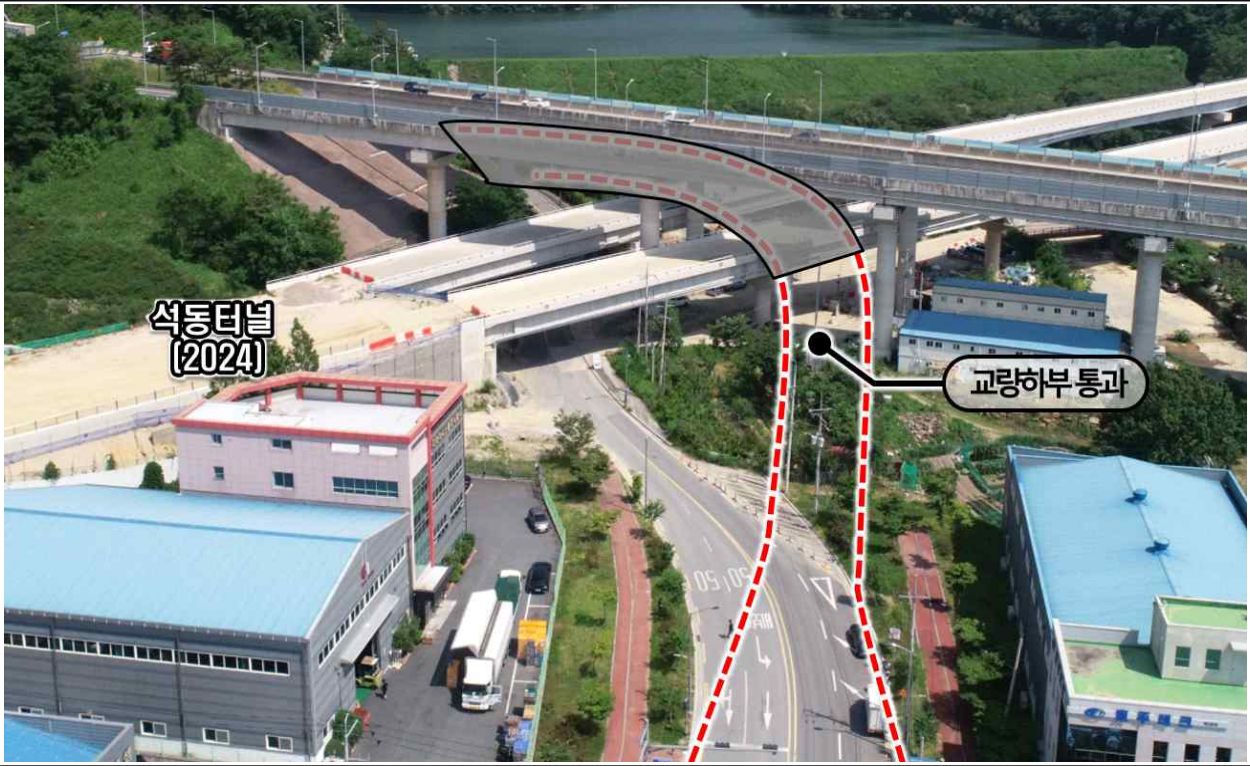
② 본 협약을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따라 임하고, 협약서 2부를 작성하여 협약당사자가 각 1부씩 보관한다.

2026년 10월 일

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이우제 (인)

창 원 시 장 강기윤 (인)

붙임 **대안사업 위치도**



市 시행 : 성주사 진입도로 선형개량공사 (13.5억원)



부산청 시행 : 토월IC 교통환경 개선공사 (41억원)